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정 2000.06.09.
개정 2002.04.09.
개정 2008.06.09.
개정 2009.03.01.
개정 2011.09.01.
개정 2012.03.01.
개정 2013.06.01.
개정 2014.06.23.
개정 2016.03.01.
개정 2016.10.31
개정 2017.03.01.
개정 2017.06.01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 25조 제 3항 및 시행세칙 제 21조 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교육부고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2조(정의)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각 스쿨은 교내에서 수업할 수 없는 전공교과목이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스쿨 교육과정에 의하여 산업체 현장실습을 전공 교과목으로 이수하도록 계획된 각 스쿨은 소정 기간의 현장실습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은 전공 및 교육과정과 연관된 실습기관(산업체)에서 1일 8시간 및 주 40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미만이거나 1주 3~4일 등의 간헐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단기근로형태는 현장 실습 시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 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④ 현장실습은 운영 시점에 따라 “학기제 현장실습(1학기, 2학기 현장실습)”과 “계절제 현장실습(하계, 동계학기 현장실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행지역에 따라 국내 현장실습과 국외 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 “학기제 현장실습”은 단기현장실습(4주 160시간)과 장기현장실습(12주 480시간) 실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계절제 현장실습”은 4주 160시간 이상 실시한다.

제4조(운영체계) ①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총괄하며, 스쿨 소속교수는 스쿨원장의 지휘로 현장실습 실무를 담당한다.

② 현장실습과 관련된 학생생활 상담, 취업진로 상담, 면접클리닉 등과 관련된 업무는 지도교수와 현장실습지원센터가 담당한다.

제 2장 현장실습기관

제5조(현장실습기관 선정조건) ① 현장실습기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중소기업 기본법, 동 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업체
 2.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 기관
 4. 노동관계법 위반 전력이 없는 기관
 5. 학생들의 진로계획을 고려하여 선정된 기관
 6. 위 각호에 준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등
- ② 제5조 ①항의 각 호에 준하여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현장실습협약을 기반으로 현장실습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 ③ 현장실습기관을 선정할 때 해당 전공의 NCS 직무 혹은 스쿨별 '교육과정 개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직무의 역량을 실습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한다.

제6조(현장실습 운영조건)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운영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이를 협의한다.

1. 실습기관 정보
 2. 현장실습 시간 및 기간
 3. 현장실습 대상 전공, 인원 및 학년
 4. 실습지원비 지급여부, 지급액, 미지급 사유
 5. 실습장소, 실습업무, 실습지도자
-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학생 교육, 지도 및 관리를 위한 현장교육 담당자의 배치
 2.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 현장실습 운영 계획
 3.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확보 및 제공
 4. 현장실습 학생 지도, 출석, 평가 관리
- ③ 계절제 현장실습, 학기제 단기현장실습에 참여중인 학생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학교경영자영업 대상책임보험 및 학생실습종합보험 등 보험에 가입·대비될 수 있어야 한다.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스쿨원장과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④ 학기제 장기현장실습(1주 480시간)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4대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학생실습종합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⑤ 실습기관은 실습 과정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 임금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며 실습지원비를 수령한 학생은 실습비 입금 내역을 스쿨에 제출한다. 비지급할 경우 학교와 학생, 실습기관이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해야 한다.
- ⑥ 대학은 현장실습의 교육목적 및 내용을 검토하여 실습기관에 대학의 시설 및 기자재를 임대해 줄 수 있다.

대학의 시설 및 기자재를 임대하여 현장실습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 제7조(현장실습기관 변경)** ① 현장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습이 중지되는 경우, 스쿨원장의 승인을 받아 현장실습 산업체를 변경하여야 한다.
- ② 학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현장실습기관의 변경은 승인할 수 없다.

제 3장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제8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4장 학생 현장실습

- 제9조(현장실습 개설시기)** ① 제 3조 ④항의 “학기제 현장실습”은 각 스쿨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기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 3조 ④항의 “계절제 현장실습”은 방학기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복학생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스쿨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설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삭제

- 제10조(현장실습 현황보고)** ① 스쿨원장은 현장실습 운영계획과 각종 신청서류를 실시 1주 전까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스쿨원장은 현장실습 완료 후 2주 내에 현장실습지원센터로 현장실습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③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은 각 스쿨별 현장실습 계획 및 실시결과, 특이사항 등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 제11조(현장실습 경비)** ① 스쿨 교육과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에 따라 실습비 및 현장실습 지도자 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계획에 의하여 산업체 또는 외부기관의 지원금이 있을 경우, 그 지원금으로 실습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현장실습 사전교육) ①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1. 현장실습 일정 및 사전교육 사항
2. 스쿨별 현장실습 프로그램
3.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 산정
4. 현장실습 평가에 필요한 서류
5.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② 스쿨에서는 현장실습운영을 위한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실습 대상자가 결정되면 현장실습지원센터는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③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인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2. 성희롱 예방교육
3. 인성 및 어학교육
4. 현장실습교육을 위하여 스쿨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제13조(학생 의무사항) ① 현장실습지에 파견된 학생은 현장실습 기간 중 취득한 산업체 또는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산업체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 기간 중 질병,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스쿨과 지도교수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14조(현장실습의 무효) ① 학생이 현장실습 중에 학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하였을 경우, 현장실습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학생의 현장실습을 무효 처리할 수 있다.

② 학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할 경우, 해당 학생의 현장실습을 무효 처리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 중 무단결근은 학칙에 준용하여 현장실습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④ 현장실습 중 회사 경영상 또는 실습환경 변화의 사유로 현장실습을 포기할 수 있다.

⑤ 현장실습을 포기하는 경우 실습생과 지도교수, 현장실습기관 지도자가 협의하여 현장실습 포기를 결정하고 현장실습포기원을 스쿨에 제출하며 곧 바로 학교로 복귀하여야 한다. 학교로 복귀 한 후의 성적평가는 Pass/Fail 제에서 등급제로 전환된다.

제15조(현장실습의 유보)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은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승인 후 유보할 수 있다.

1. 질병
2. 관혼상제
3. 폐업

4. 천재지변,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현장실습 순회지도) ① 스쿨원장은 현장실습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순회지도교수를 정하여 현장실습 기간 중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하여 주기적 순회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스쿨원장은 현장실습 종료와 함께 현장실습 순회지도 보고서를 취합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현장실습일지 작성) ① 현장실습 교육에 참가한 학생은 현장실습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현장실습 지도자와 지도교수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5장 현장실습 학점 및 성적평가

제18조(현장실습 취득학점) **제18조(현장실습 취득학점)** ① 학기제 장기현장실습은 12주 48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기간 중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최소 15학점에서 최대 24학점이며, 해당학기에 수강 신청된 교과목 중에서 실습교과와 이론교과의 비율은 스쿨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현장실습의 성적평가는 Pass 및 Fail로 부여한다. 단 수업연한 초과자의 이수 최소 학점은 원장의 권한으로 결정한다.

② 계절제 현장실습, 학기제 단기현장실습은 4주 16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 및 평가는 스쿨교육과정표에 의한다.

③ 현장실습의 학점은 학생의 입학년도에 스쿨에서 제출한 교육과정표에 준하며, 복학생 및 유급생은 현재 재학 중인 학년의 학점에 준한다.

제19조(현장실습 성적평가) ① 현장실습 평가는 절대평가로 한다.

② 계절제 현장실습과 학기제 현장실습의 성적평가는 NCS의 직무수행준거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고, 현장실습 지도자 60%, 지도교수 40% 기준으로 평가하며, 60점 이상을 Pass로 판정한다.

③ 단, 스쿨 교육과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해당 스쿨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성적평가를 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① 이외에 현장실습 이수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장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4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⑥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⑦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⑧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⑨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⑩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⑪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⑫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6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